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437
----------	-----

제출년월일 : 2026. 5. 28.

제 출 자 : 송 파 구 청 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정이유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돌발행동)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정의 명시(안 제1조~제2조)
- 나. 보험 가입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보험회사 선정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라. 보험의 보장내용 및 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마. 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 편성 필요 (보험료 지원 예산)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1)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2)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보육과)
- (3) 규제사전심사(기획예산과)

라. 기 타

- (1) 제정문안, 관계법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2) 입법예고: 2026. 4. 23.~ 5. 13. (20일간)

※ 근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다만, 발달장애인 상해 보

장 등의 일부 보장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고,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 등에게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발달장애인 보험 가입료

## 2. 미첨부 근거(이유) 규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송파구의 등록 발달장애인 수는 2,556명(2026.2월 기준)으로 보험사 견적서상 인당 보험료 가입비 약 29,000원을 산정했을 때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예상됨.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예상사업비(천원)	76,300	78,590	80,823	83,056	85,492
예상인원(명)*	2,633	2,710	2,787	2,864	2,948

\* 2023~2025년 평균 증가율 반영

## 4. 작성자

- 작성자 : 주 무 관 사회7급 신동하
- 검토자 : 장애인지원팀장 사회6급 김위영
- 결재자 : 장애인복지과장 사회5급 안현주